

건설현장 범칙금 인식도 조사

조병현 · 손기상 · 김수건*

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· *태영건설(주)

1. 서 론

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, 무지, 태만,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등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, 3년 이하 2천만원이하,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,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.

그러나,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의식,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그때마다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, 또 지적된 경우에도 어려운 현장 여건이나 근로자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법례로 집행할 수 없는 인식 등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음을 볼 수 있다.

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수많은 노력이 정부, 건설사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이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사업주와 주의처벌에서 근로자 또한 엄격히 적용해서 건설현장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고,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 해야 한다.

본 연구에서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한 단계별 벌금, 과태료들에 관련한 규정들을 7단계로 나누어 그룹화 했고 각 규정들에 대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여부, 인식도,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 가중치를 구하여 인식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

2. 본 론

2.1 관계규정조사

(A)-----

제67조[벌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한다. (개정 96.12.31)

1.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24조제1항, 제26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37조, 제38조제1항,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2. 제38조제5항, 제48조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

(B)-----

제67조의2[벌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

의 벌금 처에 처한다.(신설 96.12.31)

1.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34조제2항, 제35조제1항?3항, 제38조제3항,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2.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자
3. 제34조제4항, 제38조제4항, 제43조제4항,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

(C)-----

제68조[별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(개정 96.12.31)

1. 제29조제2항, 제34조제5항, 제43조제1항,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(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·제출한 자를 제외한다), 제49조의2제2항, 제52조의 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자
2.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.

(D)-----

제69조[별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(개정 96.12.31)

1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.
2. 제29조제6항, 제40조제2항, 제42조3항, 제43조제5항, 제45조제1항, 제2항,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40조제4항, 제41조제2항, 제42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·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
4.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·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5.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
(E)-----

제70조[별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(개정 96.12.31)

1. 제12조, 제13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6조2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·제4항, 제21조, 제29조제1항·제4항, 제21조, 제29조제1항·제3항·제5항,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32조제1항(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), 제35조제2항, 제36조제1항, 제39조, 제44조제2항, 제49조의 2제2항, 제50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2. 제15조제3항,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
3.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·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

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
(F)-----

제72조[과태료]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(개정 96.12.31)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.(개정 96.12.31)

1. 제11조제1항·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법 및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, 안전보건관리규정,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·제시하지 아니한 자
2.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(G)-----

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(신설 96.12.31)

1.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
2. 제25조,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자
3.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4. 제32조제1항(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)의 규정에 위반한 자
5. 제36조제5항 또는 제52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자
6.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7.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·제고하지 아니한 자
8.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9.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한 자
10.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
11.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
12.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

2.2 설문제작

관계규정 중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사항들만을 기초한 설문을 제작 하였다.

항목	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? 해당에 0표하시오	현장에서의 인식 정도(해당에 0표)					가중치 A~G표시						
		5	4	3	2	1	A	B	C	D	E	F	G
A	안전상의 조치	(1)안전교육 (2)자신의 정보 수집 (3)공사경험의 과정 (4)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(5)기타()	14	9	7		2	17	9	2	2	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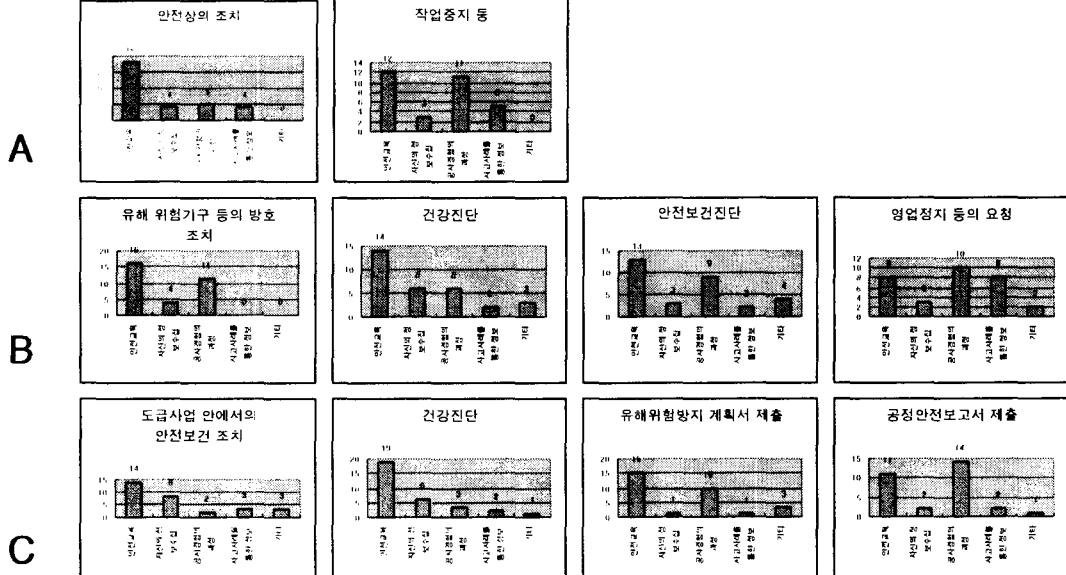
	항목	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? 해당에 0표하시오	현장에서의 인식 정도(해당에 0표)					가중치 A~G표시						
			5	4	3	2	1	A	B	C	D	E	F	G
A	작업중지 등	(1)안전교육 (2)자신의 정보 수집 (3)공사경험의 과정 (4)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(5)기타()	12	10	8	2		14	13	4				
B	유해 위험기구 등의 방호조치		11	10	8	2	1	10	15	3	3			
	안전진단		9	6	10	4	3	7	5	10	4	1		4
	안전 보건 진단		5	6	9	7	5	3	5	9	3	2	5	4
	영업정지 등의 요청		2	9	7	9	5	4	10	6	5	3	2	1
C	도급사업 안에서의 안전보건 조치		5	9	13	2	2	6	11	7	4	1	1	
	건강진단		9	7	12	3	1	9	6	12	3			1
	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작		9	6	7	8	2	6	7	7	8			1
	공정 안전보고서 제출		1	5	13	7	7		4	9	7	4	3	4
D	보고의 의무		5	10	11	5	1	2	9	10	5	1	2	2
	도급사업의 안전			9	15	6	2	1	7	9	7	5	2	
	화학물질 유해성 조사		1	9	5	13	4	1	7	9	7	5	2	
	작업환경 측정		1	8	6	12	5	2	6	5	10	4	3	1
	건강진단		9	6	8	7	1	8	6	9	8			
	질병자의 근로 금지		5	14	11	2		7	8	10	3	1	1	1
	안전보건 개선계획			10	12	3	7	2	10	9	5	3	2	
E	안전표시 부착		10	15	4	1	2	10	13	4	3	1		
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	8	11	8	3	2	6	12	8	3	2		
	안전관리자		15	11	4		2	12	10	5	1	2		
	보건관리자		2	7	6	8	9	2	7	7	5	6	2	2
	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		1	10	13	7	1	2	9	8	7	2	3	
	안전보건 교육		11	10	8	1	2	11	12	4	4			
	자체 검사		22	7	2	1		25	4	2				
	유해물질 표시		1	9	13	8	1	2	6	11	10	2		
	건강관리 수호		2	7	15	5	3	4	7	9	7	3	2	1
	안전보건 진단		3	5	8	11	5	4	5	8	5	4	4	
	안전보건 개선계획		3	6	10	6	7	1	9	5	10	4	1	1
	감독기관 신고		4	9	11	4	4	4	6	8	9		1	2
	작업환경 측정		2	5	12	6	7	2	7	7	7	3	3	1

*가중치:A,B,C,D,E,F,G중에서 가장무거운 벌금으로 인식시 A, 가장 가벼운 벌금시 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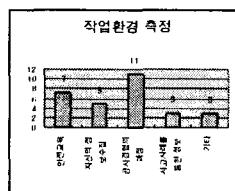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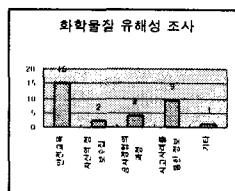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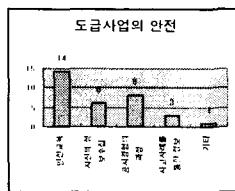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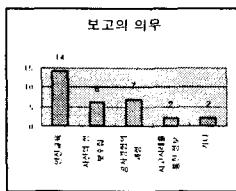
항목	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? 해당에 0표하시오	현장에서의 인식 정도(해당에 0표)					가중치 A~G표시						
		5	4	3	2	1	A	B	C	D	E	F	G
F	법령요지 게시	①안전교육 ②자신의 정보 수집 ③공사경험의 과정 ④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⑤기타()	4	5	7	10	6	5	3	8	8	4	3
	관리 감독자		2	13	14	2	1	4	11	10	5		1
	물질안전보건 자율 작성비리			5	10	10	7	1	7	6	9	4	1
	작업환경 측정		1	7	9	9	6	3	7	5	9	3	3
	법령요지 게시 등		1	8	9	10	4	3	5	6	9	5	3
G	근로자 준수 사항		10	16	2	3	1	12	12	5	1		1
	표준 안전관리비 계산		13	6	7	5	1	13	7	4	1		
	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		3	19	6	3	1	3	13	8	6	1	
	자체 검사		5	7	14	6		5	5	16	4	1	
	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		2	5	9	10	4	2	9	10	3	3	1
	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리			8	6	12	6	10	7	5	5	2	2
	작업환경 측정		2	6	12	10	2	2	8	11	6	2	1
	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		9	9	4	7	3	6	8	7	6	1	2
	공정안전보고서 제출		1	5	10	12	4	2	4	10	6	4	2
	감독상의 조치		1	12	10	4	5	4	15	6	2	1	3
	서류의 보존		4	13	5	7	3	2	12	6	8		3

3. 설문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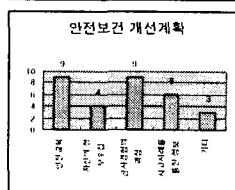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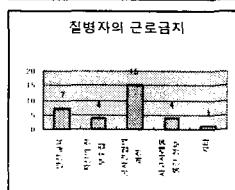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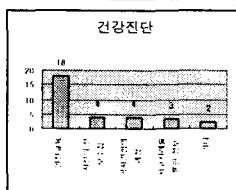
H사(6명),D사(12명),L사(7명),S사(6명),SA사(1명), 총32명의 각기업 간부급 들로만 설문을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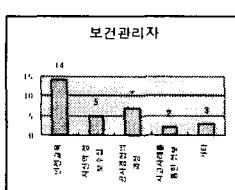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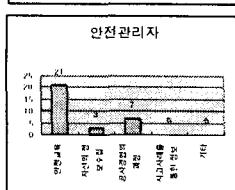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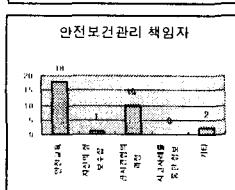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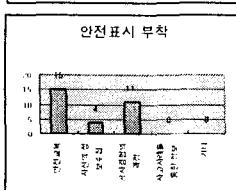
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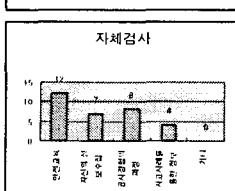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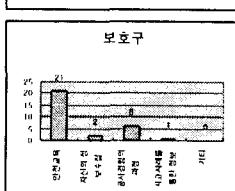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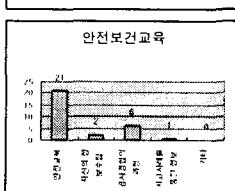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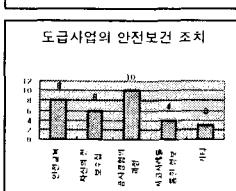
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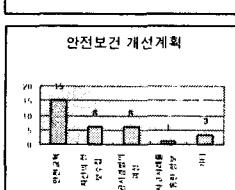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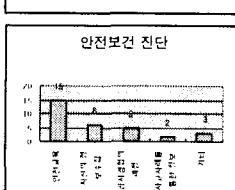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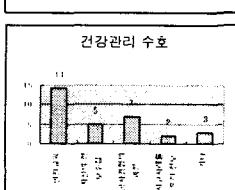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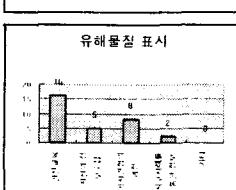
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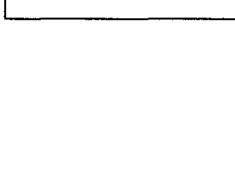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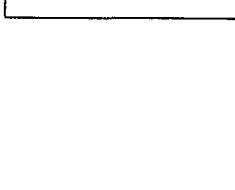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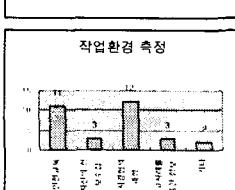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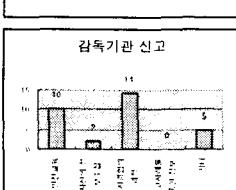
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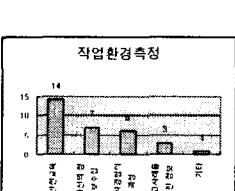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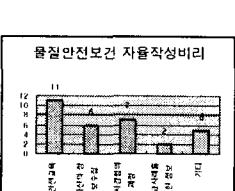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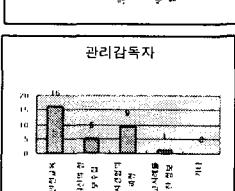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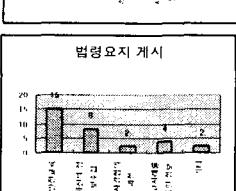
E



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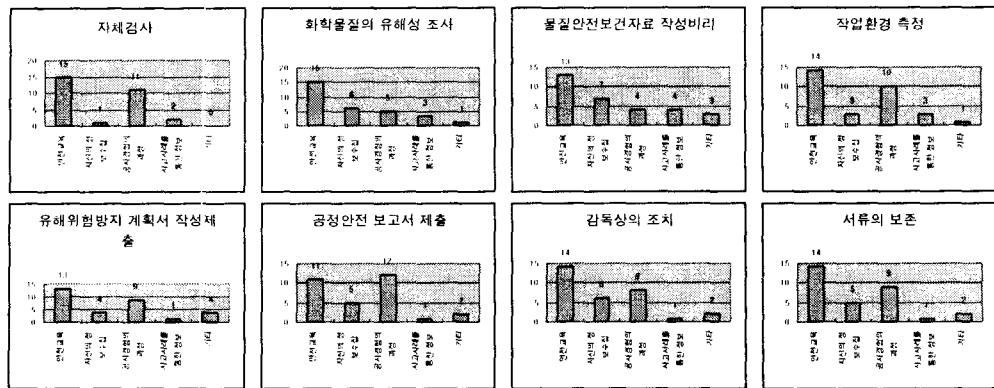


F



G

G



4. 분석

- (1) “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된 동기?”에서는 ①안전교육이 $674/1504=44\%$ 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뒤로 ③공사경험의 과정 $370/1504=24\%$, ②자신의 정보수집 $211/1504=14\%$, ⑤기타가 $142/1504=9\%$, ④사고사례를 통한 정보가 $107/1504=7\%$ 을 차지했다.
- (2) 안전교육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현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법 규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(3) “현장의 인식정도”는 3 이 가장 많은 $419/1504=27\%$ 로 나타났고, 그 뒤로 거의 비슷한 2 가 $413/1504=27\%$ 로, 5 가 $241/1504=16\%$ 로 뒤를 이었다.
- (4) “현장의 인식정도”는 각 항목별 중간정도로 안전법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(5) “가중치”는 B가 $393/1504=26\%$, C가 $353/1504=23\%$, A가 $274/1504=18\%$ 로 나타났다.
- (6) B와C가 총 49%로 과반수를 차지 한 것으로 보아 각 항목별 범칙금의 인식도 정도가 무거운 벌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5. 결론

이 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- (1) 안전에 대한 법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산업재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.
 - (2) 대부분이 안전교육을 통해 “안전법규”를 알고 있고, “사고사례를 통한 정보”와 “공사 경험의 과정”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현 법규와 그에 따른 실행 형벌과 범칙금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.
 - (3) “가중치”를 통해 볼 때 현장의 법규위반은 안전교육을 통해 무거운 벌금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, “현장인식 정도”는 보통수준으로 인식되어 실행의 미비함을 알수있다.
 - (4) 상기 사항으로 볼 때 형식적인 법규만 만들어 놓았을 뿐, 현실적으로 실제 법원의 양형이 소액벌금형에 그쳐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.
- 그러므로 근로자의 안전·보건과 직접관련이 적은 규정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,

법규의 재조정을 통하여,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 하겠다.

참고문헌

- (1) “산업안전 보건법”, 2003, 노동부 67조~72조
- (2) “2003년도 건설재해 예방 정책 방향”, 2003, (주)안전세계 pp256~258